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66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 : 윤준병 • 박민규 • 박희승

정동영 · 신영대 · 김우영

김영환 • 이춘석 • 황명선

박홍배 • 이워택 • 김태선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

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확히 명시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지속적인 경영 안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제7호).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제7호 중 "복구를 위한"을 "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 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재난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②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u>업재해대책법」</u>		
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조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③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			
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			
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			
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 6. (생 략)
-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 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 설의 <u>복구를 위한</u> 지원

8. • 9. (생략)

④ ~ ⑦ (생 략)

<u>.</u>
1. ~ 6. (현행과 같음)
7
<u>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u> 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8.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